

**< 2021학년도 제3차 규정 제·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공고 NO	규정명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교학처 (교무)	2	[4-2-14] 교직원보수규정		○		
	3	[제정]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			
교학처 (교육혁신지원센터)	4	[4-3-2]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규정		○		
계			1	2	-	

# 교직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1.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충원을 하락에 따라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직원 보수책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변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교직원보수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신설

- 관련 조항 : 안 제2조의2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책정 및 지급 관련 조항 신설

- 관련 조항 : 안 제23조제3항

다. 임금의 비밀 유지 관련 조항 신설

- 관련 조항 : 안 제24조

##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없음

붙임 1. 교직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교직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교직원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b>제2조의2(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보수</b>  <u>총액 심의·조정을 위하여 교직원보수조</u>  <u>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u>  <u>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u>  <u>정한다.</u></p>
<p><b>제3조(적용범위)</b>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u>전임교원, 직원</u>으로 하고, 총장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p>	<p><b>제3조(적용범위)</b>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u>전임교원 및 정규직원</u>으로 하고, 총장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p>
<p><b>제5조의1(보수조정)</b></p> <p>① ~ ② (생 략)</p> <p>③ <u>다만</u>, 대학이 책정한 연 총급여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원은 교학처에, 직원은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이의신청 의견과 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한다.</p> <p>④ (생 략)</p>	<p><b>제5조의2(보수조정)</b></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학이 책정한 연 총급여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원은 교학처에, 직원은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이의신청 의견과 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6조(기본연봉) ① (생 략)</b></p> <p>② <u>고정급제</u> 교원의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한다.</p>	<p><b>제6조(기본연봉) ① (현행과 같음)</b></p> <p>② <u>신규임용</u> 교원의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한다.</p>
<p><b>제7조(기본급) ①</b> 교원의 기본급은 <u>제2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u> 확정한다.</p> <p>② (생 략)</p> <p>③ <u>고정급제</u> 교원의 기본급은 교육, 연구 및 산업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p>	<p><b>제7조(기본급) ①</b> 교원의 기본급은 <u>총장의 제청으로</u> 이사장이 확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신규임용</u> 교원의 기본급은 교육, 연구 및 산업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성과급)</b> ① 성과급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 등은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한다.</p> <p>② ~ ③ (생략)</p>	<p><b>제8조(성과급)</b> ① 성과급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 등은 <u>총장의 제청</u>으로 이사장이 확정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b>제10조(기본연봉)</b> ① (생략)</p> <p>② <u>고정급제</u>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한다.</p>	<p><b>제10조(기본연봉)</b>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계약직원</u>의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한다.</p>
<p><b>제11조(기본급)</b> ① 직원의 기본급은 <u>제2조</u>에 따라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한다.</p> <p>② (생략)</p> <p>③ <u>고정급제</u>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4에 따라 학력과 산업체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p>	<p><b>제11조(기본급)</b> ① 직원의 기본급은 <u>총장</u>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확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계약직원</u>의 기본급은 별표4에 따라 학력과 산업체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p>
<p><b>제12조(성과급)</b> ① 성과급의 지급액과 지급 대상 등은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확정한다.</p> <p>② ~ ③ (생략)</p>	<p><b>제12조(성과급)</b> ① 성과급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은 <u>총장</u>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확정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b>제24조(임금의 비밀 유지 등)</b> ① 대학은 <u>개인의 업적 고과 및 평가에 의한 임금의 조정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교직원</u>은 본인의 임금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p> <p>② 대학은 <u>본인의 임금을 공개하거나 타인의 임금에 대하여 알리고 하는 자</u>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p>

# 교직원보수규정

제정	2013.05.01	전부개정	2014.02.07
개정	2014.11.19	개정	2015.09.24
개정	2017.08.14	개정	2018.03.01
개정	2019.09.19	개정	2020.03.31
개정	2020.06.02	개정	2021.05.07
개정	2021.11.05	개정	2021.00.0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국제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68조에 따라 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소속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차)** ① 총장은 매년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수총예산안을 수립한다.  
② 이사장은 총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조의2(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보수총액 심의·조정을 위하여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0.0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으로 하고, 총장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6.02., 2021.00.00.>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기본연봉과 기본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연간 지급되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제9호의 고정급제 교직원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말한다.
3. “기본급”이란 교직원 개개인의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금액을 말한다.
4. “성과급”이란 대학기여도를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연간 금액을 말한다.
5. “기본연봉외 급여”란 교직원 개인별로 지급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6. “법정수당”이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7. “연봉월액”이란 보수를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월액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날짜에 비례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연봉월액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고정급제 교직원”이란 신규임용 교원, 계약직을 말한다.<개정 2020.06.02.>

**제5조(적용기간)** ① 기본연봉의 적용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기본급을 매년 2월말까지 확정해야 하며, 성과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09.19.>

**제5조의2(보수조정)** ① 대학은 교원업적평가 및 직원근무평정 결과 등을 검토하여 개인별 임금을 결정하고 제2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교직원에게 조정결과통보로 계약을 대체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통보에 동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대학이 책정한 연 총급여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원은 교

학처에, 직원은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부서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이의신청 의견과 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교직원에게 통보한다.<개정 2021.00.00.>

④ 이의신청한 교직원의 보수는 제3항의 통보로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0.03.31.]

## 제2장 교원

**제6조(기본연봉)** ① 교원의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한다.

② **신규임용** 교원의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한다.<개정 2021.00.00.>

**제7조(기본급)** ① 교원의 기본급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확정한다.<개정 2021.00.00.>

② 기본급 인상률은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신규임용** 교원의 기본급은 교육, 연구 및 산업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1.00.00.>

**제8조(성과급)** ① 성과급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확정한다.<개정 2021.00.00.>

② 성과급 평가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 결과에 의한다.

③ 성과급 지급기준인 등급설정, 등급별 지급인원 비율 및 성과급지급률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성과급지급률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6.02.>

**제9조(기본연봉외 급여)** ① 기본연봉 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지원비

2.<삭제 2021.11.05.>

3. 직책수당

4. 직제규정 제6조 및 제7조, 제9조 제2항에 따른 보직교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8.14., 개정 2021.05.07.>

② 기본연봉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3장 직원

**제10조(기본연봉)** ① 직원의 기본연봉은 기본급(본봉과 기본수당)과 성과급으로 한다.<개정 2017.8.14>

② **계약직원**의 기본연봉은 기본급으로 한다.<개정 2021.00.00.>

**제11조(기본급)** ① 직원의 기본급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확정한다.<개정 2021.00.00.>

② 기본급 인상률은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4에 따라 학력과 산업체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개정 2021.00.00.>

**제12조(성과급)** ① 성과급의 지급액과 지급대상 등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확정한다.<개정 2021.00.00.>

② 성과급 평가기준은 직원근무평정 결과에 따른다.

③ 성과급 지급기준인 등급설정, 등급별 지급인원 비율 및 성과급지급률은 별표 2에 의한다. 다만, 등급설정은 평정결과에 따라 S와 A, C와 D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학 전체의 성과에 따라 하위등급을 배제할 수 있다.

**제13조(기본연봉외 급여)** ① 기본연봉 외 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지원비
- 2.<삭제 2021.11.05.>
3. 직책수당
4. 직급보조비<신설 2017.8.14>
5. 4급 이상 직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8.14., 개정 2021.05.07.>

② 기본연봉 외 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전항 제4호 직급보조비는 임금협정에 따른다.<개정 2017.8.14>

**제14조(법정수당)** 법정수당의 경우 우리학교 취업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5조(고정급제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고정급제 직원이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4장 보수지급

**제16조(지급방법)** 보수는 현금 또는 교직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은 소속 교직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제18조(근로소득 중 비과세 처리)** 대학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비과세 해당 급량비와 연구비는 교원 및 직원의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사무처 급여담당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제20조(보수 계산)** 교직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감액)** ① 휴직기간 중 지급하는 연봉월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직위해제,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는 별표 5와 같다.

**제23조(면직 또는 징계처분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 지급)** ① 교직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보수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 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4조(임금의 비밀 유지 등)** ① 대학은 개인의 업적 고과 및 평가에 의한 임금의 조정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교직원은 본인의 임금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② 대학은 본인의 임금을 공개하거나 타인의 임금에 대하여 알리고 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0.0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규정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② 2013년 12월 31일 개인별 연말정산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기본급과 성과급을 산정한다.

**제3조(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던 교원의 적용례)** ① 제7조의 기본급은 종전규정의 개인별 봉급의 연간 총액으로 한다.

② 제8조의 성과급은 종전규정의 개인별 각종 수당의 연간총액으로 하며, 제9조의 기본연봉외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은 제외한다.

**제4조(기존 연봉계약제의 적용을 받던 교원의 적용례)** ① 제7조의 기본급은 종전규정의 개인별 연봉액의 70퍼센트로 한다.

② 제8조의 성과급은 종전규정의 개인별 연봉액의 30퍼센트로 하며, 제9조의 기본연봉외 급여는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기존 직원의 연봉제 적용례)** ① 제11조의 기본급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개인별 기준액의 70퍼센트로 한다.

② 제12조의 성과급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개인별 기준액의 30퍼센트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성과급) 제2항과 [별표1] 교원 성과급 비중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학과평가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 기본연봉외 급여지급기준의 직책수당은 2015년 8월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계약직과 조교의 기본급 지급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보수는 본 규정에 따라 적용된 것으로 한다. 다만, 2020년 3월 대학과 합의한 교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합의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0.06.02.>

< 교원 성과급 지급기준 >

성과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10%	80%	10%

[별표 2]

< 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

성과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성과급 지급률	115%	107.5%	100%	92.5%	85%

※ 기준액 :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해 확정된 성과급

[별표 3]<개정 2021.11.05.>

< 기본연봉외 급여 지급기준 >

구 분	기준 및 시기	지급액
가족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교직원에게 지급</li> <li>▪ 범위 :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 초과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배우자</li> <li>②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li> <li>③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 직계비속</li> </ul> </li> <li>▪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li> <li>▪ 지급시기 : 매월 급여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 월 40,000원</li> <li>▪ 직계존속, 직계비속 : 월 20,000원/인</li> <li>▪ 자녀&lt;개정 2017.8.14&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째 : 월 20,000원</li> <li>둘째 : 월 60,000원</li> <li>셋째 : 월 100,000원</li> </ul> </li> </ul>
직책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보직발령자</li> <li>▪ 겸직시 최상위 직책수당만 지급하며, 지급시기, 보직별 지급액 및 기타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함 &lt;개정 2017.8.14&gt;</li> </ul>	

[별표 4]<개정 2020.06.02.>

< 계약직의 기본급 지급기준 >

구분	신규 임용시 연봉
계약직	<삭제 2018.03.01>
	1. 신규임용자의 군경력, 자격,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2. 2년차의 경우 근무평정결과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별표 5]

<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보수 지급기준 >

구 분		지급율
직위해제		8할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5할
징계	견 책	전액지급
	감 봉	3분의 2
	정 직	3분의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3분의 1
	해 임	발령일까지 일할계산
	파 면	발령일까지 일할계산
휴직	질병휴직(제21조)	7할
	결핵질환 휴직(제21조)	8할
	공무상질병휴직(제21조)	전액지급
	해외유학,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5할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기본급의 40%만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함.

#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 1. 제안이유

교직원 보수 조정과 관련된 사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관련 조항 : 안 제2조, 제3조

나.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련 조항 : 안 제8조

##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교직원보수규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없음

붙임: 교직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2021.00.00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이하 “보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국제대학교에 설치하는 교직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보수규정에서 정한 적용 대상 교직원의 보수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교직원들의 의견수렴
2.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책정
3. 기타 보수 규정 운영 개선사항 권고 및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② 위원회는 보수조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함에 있어 관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학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회의 참석 및 전문가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장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총장, 총장이 지명하는 3인의 당연직 위원 및 교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위원은 기획처장, 교학처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교원 위원은 전체교수회의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한다.

④ 직원 위원은 직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거나 선출한다.

⑤ 교직원의 보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원 소위원회 :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교원 위원
2. 직원 소위원회 :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직원 위원

⑥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위원회 위원이었던 자가 교직원의 자격 또는 보직을 상실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3. 사임하였을 때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8조(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매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보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심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를 개최·운영한다.

③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등의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관련 보직자와 교직원의 출석 발언)** 위원회가 인정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총장을 비롯하여 대학 교직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대학에 즉시 통보하고, 대학은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5조(운영경비 등)** ①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의 경우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이외의 경비는 그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 제4장 위원회 규정의 개정

**제16조(규정 개정의 제안)** 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2인 이상의 위원이나 위원장 또는 총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17조(규정의 개정)** 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의견을 확정하고, 대학은 관련 절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만료)**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내 제 규정의 절차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 1. 제안이유

- 간호과 4년제 전환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간호과 3년제의 경우 120학점 이상), 4년제 학과는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편성 학점은 2년제 80학점 이하, 3년제 116학점 이하, 4년제 140학점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 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련조항 : 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

##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규정 : 학칙, 학칙시행세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교학처
- 라. 기 타 : 없음

- 붙임 1.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교과목대비표 1부.  
2.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일부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교육과정 개발)</b> ①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학과의 학제에 따라 3년제 과정인 경우는 3년 주기, 2년제 과정인 경우는 2년 주기로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핵심역량이 변경되는 경우 학과는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p> <p>② (생 략)</p>	<p><b>제4조(교육과정 개발)</b> ①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학과의 학제에 따라 <u>4년제 과정인 경우는 4년 주기</u>, 3년제 과정인 경우는 3년 주기, 2년제 과정인 경우는 2년 주기로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핵심역량이 변경되는 경우 학과는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b> ① 학칙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생 략)</p> <p>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 이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편성 학점은 2년제 80학점 이하, 3년제 116학점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 학점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편성 학점에 현장실습 과목(학점)은 제외 한다.</p> <p>3. ~ 11. (생 략)</p> <p>② (생 략)</p>	<p><b>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b> ① 학칙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 이상(<u>간호과 3년제의 경우 120학점 이상</u>), <u>4년제 학과는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u>, 교육과정 편성 학점은 2년제 80학점 이하, 3년제 116학점 이하, <u>4년제 140학점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u>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 학점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편성 학점에 현장실습 과목(학점)은 제외 한다.</p> <p>3. ~ 11.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교과목 이수) ①</b> 교양·직업기초교과 및 전공교과를 다음의 학점취득기준에 의하여 이수하며,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p> <p>1. 교양·직업기초교과는 인성, 교양,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교과로 2년제 9학점, 3년제 13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양·직업기초교과의 내용 중 일부를 정규교과로 개설된 한국어강좌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2. (생략)</p> <p>3. 전공교과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며,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간호과))에 상관없이 2년제 42학점, 3년제 63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b>제9조(교과목 이수) ①</b> 교양·직업기초교과 및 전공교과를 다음의 학점취득기준에 의하여 이수하며,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p> <p>1. 교양·직업기초교과는 인성, 교양,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교과로 2년제 9학점, 3년제 13학점, <b>4년제 25학점</b>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양·직업기초교과의 내용 중 일부를 정규교과로 개설된 한국어강좌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전공교과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며,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간호과))에 상관없이 2년제 42학점, 3년제 63학점, <b>4년제 70학점</b>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제정	2010.07.01	개정	2010.12.24
개정	2011.12.30	개정	2013.05.01
개정	2013.12.04	개정	2014.02.07
개정	2015.04.30	개정	2016.04.20
전부개정	2018.10.19	개정	2019.09.19
개정	2019.12.27	개정	2020.09.02
개정	2021.05.07	개정	2021.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6조 내지 제18조,19조에 의거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발”은 신설 학과 또는 학과의 학제에 따른 개발 주기에 있는 경우 또는 학과의 인재양성유형이나 교육목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교육과정 개편”은 학과의 학제에 따른 개발 주기 내에서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서, 하위역량 및 능력단위 요소 또는 행동지표 및 수행준거의 변경과 일부 교과목의 신설 또는 삭제 등의 개편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개정 2020.09.02.>

**제4조(교육과정 개발)** ① 매 학년도 교육과정 개발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의 인재양성유형과 교육목표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학과의 학제에 따라 4년제 과정인 경우는 4년 주기, 3년제 과정인 경우는 3년 주기, 2년제 과정인 경우는 2년 주기로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핵심역량이 변경되는 경우 학과는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개정 2020.09.02., 2021.00.00.>

② 교양교육과정은 매 학년도 별도의 개발 및 변경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교육과정 개편)** ①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까지의 과정 설계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와 개발 주기에 있지 않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개편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며, 전년도에 설정한 인재양성유형 및 교육목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개편한다.

1. 교과목의 신설 및 폐지
2. 기존 교과목의 명칭 변경
3. 하위역량, 능력단위요소(수행준거)의 신설 및 변경<개정 2019.12.27., 2020.09.02.>
4. 교과목 이수 학기 변경
5. 교과목 학점 및 시수 변경
6. 기타 개편이 필요한 경우

③ 교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학과는 인재양성유형과 산업환경변화, 수요자 의견 등 필요성과 타당성에 기반하여 신설 및 폐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개편절차는 교육과정편성지침에 따른다.

**제6조(책임과 권한)** ① 교육과정 개발·개편 주관부서는 교육혁신지원센터, 운영 주관부서는 교학처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1. 교육과정편성기준 작성

2. 교육과정편성표 검토 및 심사의뢰
3. 교육과정 운영관리

② 교육과정 운영의 관련부서는 각 학과 및 교육혁신지원센터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1. 교육과정편성표 작성
2. 교육과정 개편요청
3.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양·직업기초위원회 운영<개정 2019.09.19.>

③ 학과 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양·직업기초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1. 교육과정 편성 기준 및 개편사항 검토
2. 교육과정편성표 심의

**제7조(교육과정 편성원칙)** ① 학칙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원칙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육과정은 대학의 핵심역량, 하위역량 및 학과에서 도출한 전공역량 등을 반영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만, 주문식교육과정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09.02.>
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 이상(간호과 3년제의 경우 120학점 이상), 4년제 학과는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편성 학점은 2년제 80학점 이하, 3년제 116학점 이하, 4년제 140학점 이하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편성 학점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편성 학점에 현장실습 과목(학점)은 제외 한다.<개정 2021.00.00.>
3. 교육과정은 교양·직업기초교과, 교직교과, 전공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비율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09.02.>
4.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로 구분한다. 다만, 역량중심 교육특성화 교과목의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0.09.02.>
  - 가. 교양필수/교양선택(직업기초)(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신설 2020.09.02.>
  - 나. 전공필수/전공선택(산학공동, 복합, 융합, 글로벌)<신설 2020.09.02.>
5.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전공교과로 편성한다.<개정 2020.09.02.>
6. 과목당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1학점 ~ 4학점 이내로 개설 할 수 있다.
7. 2개 학과 이상에서 개설하는 동일과목은 같은 학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8. 2개 학기 이상 개설하는 동일 교과목은 I, II, III, IV 등으로 표시한다.
9. 교직교과는 2과목(4학점)으로 편성한다.
10. 학점 당 시간 수는 1학점 당 1시간으로 편성하며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1. 기타 편성원칙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육과정개발·개편보고서는 학과에서 발의하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 여부는 학과에서 제출한 [별표1]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 신청서를 대학의 단계별 심의 과정을 거쳐 총장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개정 2020.09.02.>

**제8조(위원회)** 교육과정의 개발·개편을 위해 교육혁신위원회,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과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9., 2020.09.02.>

1. 교육혁신위원회, 교양·직업기초위원회, 교육혁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역량기반 교육품질 관리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0.09.02.>
2.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교육과정위원회규정을 적용한다.

3. 학과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9.02.>

가. 구성 : 학과 소속 전체 전임교원과 인재양성유형과 일치하는 산업체 현장전문가 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고등학교 교원 또는 타 대학의 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05.07.>

나. 기능

- 1) 전공교육과정의 개발·개편에 관한 사항<개정 2021.05.07.>
- 2) 전공교육과정 및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3) 산업체와의 교육과정(주문식 교육과정 포함)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09.19.>

**제9조(교과목 이수)** ① 교양·직업기초교과 및 전공교과를 다음의 학점취득기준에 의하여 이수하며,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한다.

1. 교양·직업기초교과는 인성, 교양, 직업기초능력을 포함한 교과로 2년제 9학점, 3년제 13학점 이상, **4년제 2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유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양·직업기초교과의 내용 중 일부를 정규교과로 개설된 한국어강좌로 대체하여 이수 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09.19., 2021.00.00.>

2. 교양·직업기초과목은 학과에 편성된 교과목의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타 학과에서 편성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9.09.19.>

3. 전공교과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며,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간호과))에 상관없이 2년제 42학점, 3년제 63학점 이상, **4년제 7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09.02., 2021.00.00.>

② 매학기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 21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고,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에서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0.09.02.>

③ 타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 신청 시 사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교과이수)** ① 교육과정은 입학년도에 제정된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을 경우에는 현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휴학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현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재입학생의 교과이수는 현교육과정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입학전에 이수한 과목은 현교육과정에 의거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교육과정의 변경)** 개발·개편된 교육과정 운영 중 자격증 또는 인증 관련 교과의 변경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